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04호 2018. 11. 19(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5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5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61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6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7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18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55호

제3종 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 11.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가좌진주1차아파트 1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2	아파트주민 자치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31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2019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2019년 상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좌진주1차아파트 2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2	아파트주민 자치회			
가좌진주1차아파트 3동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2	아파트주민 자치회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5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1.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드림로 256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11.1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11-1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91-2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256 (백석동)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43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23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82-7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36 (마전동)	20081231	완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124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98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8-14, 1658-1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6로 36 (오류동)	20121025	보듬로에서 여섯번째 분기되는 도로	토성드페리움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38-5, 1638-11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8로 12 (오류동)	20121025	도담로에서 여덟번째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34-7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246번길 31 (오류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110-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34번길 18-4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110-17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34번길 18-5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70-7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8번길 7-8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1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54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17번길 2 (가좌동)	20170703	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17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54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17번길 4 (가좌동)	20170703	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17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73-28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43번길 26-2 (가좌동)	20170703	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43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90-3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196번안길 12-5 (원창동)	20171025	원석로196번길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93-1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196번안길 4-2 (원창동)	20171025	원석로196번길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157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16번길 31 (청라동)	20180827	청서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60M 오른쪽으로 분기된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5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1.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불로동 803-1~803-4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이토씨앤디(주)(대표자:김시춘), 경현산업개발(주)(대표자:김시춘)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불로동 803-1~803-4번지(불로동 불로지구 44-1블록 1-1로트~1-4로트)
 - 나. 대지면적 : 27,301.1㎡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79,865.1817㎡(지하 2층, 지상 27층)
 - 라. 용도 : 공동주택 7개동(아파트 5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리. 사업시행 기간 : 2019. 4. ~2022. 1.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6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11.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다변화 된 산업구조와 관내 기업의 요구 및 근로자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이 미비하여 관련 근거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관계종사자에 대한 보조금(사업비)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단체의 지원에 대한 사항 정비
- 중소기업근로자 사기진작 및 포상을 위한 사항 정비
- 다변화된 산업구조화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443, 팩스 560-273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다변화 된 산업구조와 관내 기업의 요구 및 근로자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이 미비하여 관련 근거를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주요내용
 - 제1조 ~ 제3조에서는 목적, 용어 및 조례에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사항
 - 제4조 ~ 제9조 에서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단체의 지원에 대한 사항
 - 제10조 ~ 제11조 에서는 중소기업근로자 지원에 대한 사항
 - 제12조 ~ 제13조 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용 및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
 - 제14조 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참조)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기관(단체) 및 관계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2.“기업인”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 3.“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기술개발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2.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
3. 제품인증획득 지원
4.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기업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2.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제공 지원
3. 기업정보지는 매월 1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배부를 위해 모사전송 등의 고속 통신수단을 활용한다.

제6조(해외진출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2.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3. 해외지사화 지원
4. 해외시장조사 정보서비스 제공
5. 외국어 통·번역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7조(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추진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품홍보관 운영) ①구청장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우수제품 홍보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제품홍보에 대한 질서유지와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관 공간에 맞게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전시물품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구정홍보매체(인터넷, 구정소식지 등)를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 소개나 기업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관리자 세미나 개최
2.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 지원
3. 자동차 무료점검 행사 지원
4. 그 밖에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간 정보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근로자 사기진작) 구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 생산성향상 및 노사화합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모범근로자 및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 노동조합, 사회공헌 활동 기업, 우수기업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사용·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적용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661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30호(2018.9.1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주차장, 사업명: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도로·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 명칭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도로·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확폭 구간

노 선 명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중로 3-325	12	70	416.8
소로 2-52	8~12(4)	167(50)	189.7
소로 3-34	6~10(4)	363(122)	485.9

시 설 명	면 적 (㎡)	주차면수
주차장	368	15면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조합장 조천휘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22번길 19, 원광빌딩 3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91-3	대	1,760.0	80.9	롯데우람 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22번길 19 원광빌딩 3층			
491-4	대	1,013.6	452.3(319)					
491-5	대	89.3	89.3(49)					
492	대	695.4	251.4					
492-1	대	5,197.7	355.1					
493	대	5,416.0	195.0					
633	도	6,051.6	36.4	인천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 () 주차장 면적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중로	3	325	12	국지도로	70	소로2-52	롯데우람 정비구역	일반도로		2012.6.11.	
도로	소로	2	52	8 (8~12) [4]	국지도로	167 [50]	소로2-447	중로1-57	일반도로		2012.6.11.	
도로	소로	3	34	6 (6~10) [4]	국지도로	363 [122]	중로2-38	대로1-11	일반도로		2012.6.11.	

※ [] 구역 내에 관한 사항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주차장	서구 석남동 491-5번지 일원	368	2012.6.11.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66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안) 열람 ·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 공고합니다.

2018. 11.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주요 입안내용

가. 시설명 : 도시계획시설(녹지)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21번지 일원
- 내용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나. 입안사유

- 인근 저유시설과의 차폐를 통한 도시경관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녹지	경관녹지	서구 원창동 213-21번지 일원	1,384	증) 206	1,590	2016.11.0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263)	

2)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증가 - 1,384㎡ → 1,590㎡ 증) 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도로접합 부분까지 녹지연장) 이행 및 도시계획시설 토지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정정을 통하여 녹지의 유지관리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2)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2)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갖추어 둠). 끝.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67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11.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사유

- 관내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도시개발로 당직근무자 근무 부담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당직근무 수당의 현실화 및 당직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당직근무 운영의 효율성 증대

2. 주요내용

- 당직근무자의 휴무 가능일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로 변경(안 제5조)
- 당직수당을 60,000원으로 인상(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2018. 12. 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096,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관내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도시개발로 당직근무자 근무 부담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당직근무 수당의 현실화 및 당직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당직근무 운영의 효율성 증대

2. 주요내용

- 당직근무자의 휴무 가능일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
- 당직수당을 6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 가. 개정안: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7일”을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10일”로 한다.

제5조의2 중 “50,000원”을 “6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근무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과 숙직근무(재택근무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u>7일</u>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 ----- ----- ----- ----- ----- <u>토요일 · 공휴일을 제외</u> <u>한 10일</u> -----.</p>
<p>제5조의2(당직수당)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u>50,000</u> 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p>	<p>제5조의2(당직수당) ----- ----- <u>60,000</u> <u>원</u>-----.</p>

관계법령 발췌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③ (생략)

-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12.20)
-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1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3.30.시행)

○ 일·숙직비는 1일(야)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다만,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